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 13 선고 2022가단111204 판결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1. 18.

판 결 선 고 2023.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및 측정장비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웹사이트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0. 7. 31. PC, Mobile 웹사이트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웹 사이트 제작 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원고

을 C

제3조(용역기간)

용역기간: 2020. 7. 31.부터 2021. 1. 31.까지

(혹은 결과물의 제작완료에 대한 상호 동의 시까지)

제4조(웹사이트 운영비용 및 대금지급)

갑과 을의 계약목적물의 제작비용을 총 ₩45,000,000으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갑은 을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분할지급>

- 2020. 7. 31. 대금 9,000,000원을 을에게 계약금으로 지급
- 퍼블리싱 작업을 마친 뒤 13,500,000원을 을에게 중도금으로 지급
- 사이트 검수를 마친 뒤 22,500,000원을 을에게 잔금으로 지급

제7조(상호협력)

-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을은 갑의 웹사이트를 제작함에 있어서 갑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며, 갑 또한 제작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한다.

제9조(계약변경)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변화 등으로 용역범위, 용역기간 및 용역비용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해 본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0. 8. 3. 계약금 900만 원, 2020. 11. 18. 중도금 1,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0. 12. 14. 추가개발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요청으로 2021. 4. 30. 잔금의 50%인 1,125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21. 9. 8. 원고의 이사에게 수정 작업으로 인하여 이전에 작업한 비용 손실이 있음을 이유로 잔금 50%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의 이사는 최종 잔금은 사이트 제작 완료 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고는 2021. 9. 9. “계약 지속을 원할 경우 남은 잔금(1,150만 원)과 본사의 피해 금액의 50%인 1,500만 원 총액 2,650만 원을 본사에 입금해야 하며, 계약 파기에 동의할 시 현재까지 작업된 원본 파일을 귀사에 잔금 50%를 받고 보내는 것으로 계약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21. 9. 9.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통보하고,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금 및 추가개발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잔금 지급 의무는 웹사이트 검수 후에 발생함에도, 피고는 2021. 9. 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잔금 50%인 1,150만 원을 포함하여 2,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한 후 원고 담당자들과 피고 및 C의 직원들이 이 사건 계약 진행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던 단체채팅방에서 원고 담당자들을 모두 삭제하여 일방적으로 의견 교환을 중단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웹사이트 제작 작업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피고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22. 4. 6.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22. 4. 6. 해제되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관련 법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위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대금 중 피고의 기성고를 넘어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을 제6, 7, 8,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정한 용역 기간은 2020. 7. 31.부터 2021. 1.

31.까지임에도 용역 기간이 2021. 9.경까지 연장되었는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원고 담당자가 2회 변경되면서 피고가 이전 원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완성한 디자인 전반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거나, 피고가 이전 원고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한 퍼블리싱 및 개발 작업에 관하여 전반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등 광범위한 수정작업을 하게 된 것이 주된 작업 기간 연장 사유로 보여 원고는 연장된 8개월 동안 이 사건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용역을 초과하여 수행한 점, ② 2021. 8.

말경에는 PC 웹사이트의 개발까지 완료되어 그 무렵부터 원고 담당자는 테스트를 진행한 점, ③ 작업 진행 정도를 고려하면 모바일 작업은 2021. 9. 20. 완료될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웹사이트 제작을 중단한 2021. 9. 9. 무렵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웹사이트 제작은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성고를 초과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수진